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박능후 (보건복지부 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현재 소득월액 포함되는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기준이 시행령과 건강보험공단 지침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어 이를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법률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소득월액 산정 소득의 기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신설 (안 제41조제1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8. 21. ~ 9. 10.)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(이하 “소득월액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포함한다. 이 경우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,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의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1. 「소득세법」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
2. 「소득세법」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
3. 「소득세법」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
4. 「소득세법」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
5. 「소득세법」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.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6. 「소득세법」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1조(소득월액)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(이하 “소득월액”이라 한다)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.	제41조(소득월액)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(이하 “소득월액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포함한다. 이 경우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,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의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1. 이자소득: 「소득세법」 제16조에 따른 소득	1. 「소득세법」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
2. 배당소득: 「소득세법」 제17조에 따른 소득	2. 「소득세법」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
3. 사업소득: 「소득세법」 제19조에 따른 소득	3. 「소득세법」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
4. 근로소득: 「소득세법」 제20조에 따른 소득. 다만,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	4. 「소득세법」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.
5. 연금소득: 「소득세법」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. 다만,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	5. 「소득세법」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.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6. 기타소득: 「소득세법」 제21조에 따른 소득	6. 「소득세법」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

② ~ ④ (생 략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706